

보다 안전한 미래
(사)한국시설물안전진단협회

(우)06367 서울시 강남구 광평로 280(수서동, 로즈데일오피스텔 1828호) / Tel 02-567-1307/ Fax 02-567-1337
www.assi.or.kr E-Mail : assi1307@naver.com 담당 : 박용복국장 (H·P) 010-8688-5619

문서번호 시험 2019 - 167호

시행일자 2019. 8. 5.

수 신 동대문구청장

참 조 분임 재무관

선			지	
결			시	
접	일자		결	
	시간			
수	번호		재	
처	리	과	공	
담	당	자		람

제 목 「2019년 5차 6차 7차 동대문구 공공건축물 내진성능평가(점검)용역(긴급)」 입찰 시정 및 변경요청

1. 귀 구청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귀 구청이 「2019년 5차 동대문구 공공건축물 내진성능평가(점검)용역(긴급)」, 「2019년 6차 동대문구 공공건축물 내진성능평가(점검)용역(긴급)」, 「2019년 7차 동대문구 공공건축물 내진성능평가(점검)용역(긴급)」을 발주하면서 다음 공고 내용과 같이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가 건축구조기술사를 보유해야 한다는 조건을 내세운 것은 참여업체의 과도한 제한으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시설물 안전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시정 및 변경을 요청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공고내용

(1) 입찰참가자격 : 입찰공고일 현재,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안전진단전문기관(건축 또는 종합 분야)으로 등록하고, 책임기술자(해당 분야의 정밀안전진단교육을 이수한 건축구조기술사)를 보유한 업체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9조 제2항에 해당하는 안전진단전문기관은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나. 변경입찰 요청기준 및 요청사항

(1)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시설물 안전법’)에 따라 실시하는 시설물의 내진성능평가 용역의 책임기술자의 자격은 동법 시행령 제 9조에 따르면 ‘안전점검 등 또는 성능평가를 자신의 책임 하에 실시할 수 있는 사람’으로 국토교통부 장관이 인정하는 ‘정밀안전진단 또는 성능평가교육을 이수한 자’로서, 학력+기술자격+경력+교육으로 산정한 기술자 역량지수(ICEC)에 의하여 이미 건축구조기술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발주근거는 시설물안전법과 지진·화산재해대책법(이하 ‘지진대책법’)이고, 참가자격은 시설물안전법의 조건을 요구하였으니 책임기술자 자격 조건도 시설물안전법을 준수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그러나 내진성능평가가 지진대책법에 근거하여 발주하였다고 사업 책임기술자의 자격 조건을 시설물안전법의 조건에 기술사라는 자격조건을 추가하는 것은 건설기술진흥법과 시설물안전법의 규정을 무시한 과도한 제약입니다.

규모가 작은 시설물에까지 이렇게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은 관련법의 안전성을 훼손하고 오히려 부실용역과 불법하도급을 조장할 수 있으며, 참여업체의 과도한 제한으로 시장질서를 어지럽혀 법정 ‘안전진단전문기관’의 기회를 박탈하는 것이라는 것을 감안하시어 제한 조항을 수정·보완하여 주시기를 강력히 요청하는 바입니다.

(2) 시정 및 변경요청 사항 : 입찰참가자격에서 건축구조기술사를 삭제하고 특급기술인으로 수정. 끝.

(사)한국시설물안전진단협회

